

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3. 24.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한국고전번역원의 목적 및 사업으로 추가되는 ‘국가고전번역사업의 정보관리’ 개념 및 고전문헌 번역 관련 ‘정보제공 주체’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한국고전번역원의 목적 및 사업에 ‘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 관리’를 추가하고, ‘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고전문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개인·기관·단체 또는 법인 등’은 해당 번역사업의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조·제6조제6호 및 제15조제3항).

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번역하고 국가고전번역사업의 정보관리를 통하여”를 “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”로 한다.

안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

안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고전문헌 번역 사업을 수행한 개인·기관·단체 또는 법인 등은 해당 번역사업의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 을 수집·정리· <u>번역</u> <u>함으로써</u>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 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번역</u> <u>하고</u> <u>국가고전번역</u> <u>사업의 정보관리를</u> <u>통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번역</u> <u>하고</u> <u>고전문헌 번역</u> <u>정보를 통합관</u> <u>리함으로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사업)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제1호부터 제5호 <u>까지의</u> 사업에 부 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	제6조(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 음) 6. <u>국가고전번역사</u> <u>업의 정보관리</u> 7. ----- <u>제6호</u> <u>까지의</u> ----- ----- -----	제6조(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5. (개정안과 같음) 6. <u>고전문헌 번역</u> <u>정보의 통합관리</u> 7. (개정안과 같음)

사업 제15조(업무협조 등) ① · ② (생략) <신설>	---- 제15조(업무협조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번역사업 수행 주체는 번역 관련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.</u>	제15조(업무협조 등) ① ·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<u>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고전문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개인·기관·단체 또는 법인 등은 해당 번역사업의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.</u>
---	---	--

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준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88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16.

발 의 자 : 김준혁 · 이수진 · 김동아
박지원 · 김영호 · 박희승
김병주 · 염태영 · 강유정
윤종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·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. 그러나 최근 K-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·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K-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.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나,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임.

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

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조 등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한국고전번역원의 목적 및 사업에 ‘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 관리’를 추가하고, ‘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고전문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개인·기관·단체 또는 법인 등’은 해당 번역사업의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조·제6조제6호 및 제15조제3항).

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번역함으로써”를 “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”로 한다.

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(종전의 제6호) 중 “제5호까지의”를 “제6호까지의”로 한다.

6.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

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고전문헌 번역 사업을 수행한 개인·기관·단체 또는 법인 등은 해당 번역사업의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국고전번 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·정리· <u>번역함으로써</u> 한 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번역하고 고전문헌 번</u> <u>역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</u> 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사업) 번역원의 사업은 다 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 6. 제1호부터 <u>제5호까지의</u>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	제6조(사업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</u> <u>관리</u> 7. ----- <u>제6호까지의</u> ----- ----- -----
제15조(업무협조 등) ① .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5조(업무협조 등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</u> <u>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고전문</u> <u>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개인·기</u> <u>관·단체 또는 법인 등은 해당</u> <u>번역사업의 번역 정보를 번역</u> <u>원에 제공할 수 있다.</u>